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24
----------	------------

제안년월일: 2021년 6월 2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후 제300회 임시회 시 가결되어 신설된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의 반영 및 조문 재정비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현행 제31조제1항제11호('21.5.20 개정) 반영 및 조문 재정비
(안 제31조제1항제1호 ~ 제9호)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을 적용)</u></p> <p>7. ~ 8. (생략)</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 ~ 6.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p>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u>천재지변 지역</u></p> <p>2.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u></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u></p> <p>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u></p> <p>5. <u>자가검침 참여 수도 사용자등</u></p> <p>6. <u>전자고지 신청 수도 사용자등</u></p> <p>7.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p>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 12. (생략)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② (생략)

<삭제>

7. ~ 8. (현행 제10호와 및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천재지변 지역</u> 2.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u>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권자</u> 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u> 5. <u>삭제 <2012.15></u> 6. <u>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을 적용)</u> 7. <u>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u> 8. <u>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u> 9. <u>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u> 10.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천재지변 지역</u> 2.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u> 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권자</u> 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u> 5. <u>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u> 6. <u>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u> 7.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 8.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u>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u> 9.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
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
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
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